

## 폴리에스터事件의 敎訓

— 6年法廷劇이 和解로 落着 —

1957年 英國의 임피리얼 케미칼 인더스트리즈會社는 폴리에스터纖維의 製法에 관한 特許技術을 日本의 帝人과 現在의 東洋兩社에 實施許諾하였다.

이 特許는 英國의 캐리코 프린터즈가 保有하고 임피리얼은 캐리코로부터 日本에서의 實施權만을 허락받았다. 그 特許의 發明名稱은 高重合物質의 製造法(1953. 12. 18登錄)과 高重合物로부터 人造纖維의 製造法(1955. 5. 14登錄)의 두 가지였다.

帝人과 東洋는 임피리얼과의 技術支援契約下에 58年부터 그 실시권과 노우하우에 의거하여 폴리에스터섬유의 生產·販賣를 開始하는 한편 商標는 데트론이라고 共用하였다.

한편 同種纖維企業인 東洋紡織이 1961年 美國의 군 이어, 현재의 유니티카는 스위스의 인벤티, 현재의 쿠라제는 美켐스트런드會社로부터 각각 폴리에스터纖維技術을 도입하기로 決定하고 1962년에는 技術支援契約에 대한 政府의 認可를 받기로 하여 상표는 에스터로하여 3社가 共用키로 하였다.

이 事實을 探知한 캐리코는 直刻 權利範圍確認審判訴를 提起하고 前記 3社의 技術이 自社의 特許範圍임을 確認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提訴는 生產前이기 때문에 特許侵害아닌 權利範圍確認에 이른 것이다. 이 때의 캐리코의 攻擊은 기술지원계약에 대한 政府認可直前에 開始한 것이다.

또한 캐리코는 民訴管轄上 被訴者の 本社住所인 大阪(東洋紡), 京都(유니티카), 岡山(쿠자레) 地法에 각각 提訴하였고 訴內容인즉 첫째의 高重合物質의 製造法에 의한 기술은 폴리메틸렌글리콜과 티레푸탈酸을 反應시켜 그 反應生成物을 加熱하여 高重合된 狀態의 에스터로 만든다는 要旨였고 둘째 발명특허인 高重合物

로부터 人造纖維의 製造法도 첫째 발명특허에서 生成된 에스터에서 인조섬유를 제조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東洋紡等 後發 3社는 그들이 도입한 기술은 重合方法의 出發物로서 폴리메틸렌글리콜과 티레푸탈酸을 含有하기는 했으나 第3原料를 加하여 染色性, 強度등이 보다 優秀한 生成物을 만드는 것이며 그 第3原料란 東洋紡의 기술은 이소푸탈酸, 유니티카는 파라오키시安息香酸, 쿠자레는 메트키시폴리메틸렌글리콜이라고 抗辯하였다.

그러나 쿠자레를 상대로한 岡山地法에서는 3年半後에 和解가 成立되었고 條件인즉 쿠자레에 帝人과 東洋에게 再實施許諾料를 35,000萬円과 그 후부터 1%, 임피리얼에 대하여는 3,000萬円과 2%를 支拂키로 한 것이다.

한편 그로부터 2年後에 東洋紡事件을 다루던 大阪地法에서는 군 이어에서 도입한 기술은 캐리코의 特許權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한편 그 半年後인 유니티카를 맡은 京都地法에서는 캐리코의 勝訴를 宣言하였다.

이같은 大阪地法事件判示에 따라 캐리코는 上級法院인 大阪高法에 抗訴하였고 帝人과 東洋도 東洋紡과 유니티카를 상대로 10億円의 損害賠償請求를 제소하는 등 複雜해졌다.

이때의 캐리코特許權은 存續期間이 經過되었고 損害請求로 바꾼 理由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大阪高法은 1969年 7月 和解를 勸誘하여 다음해의 1月에는 和解를 成立시켰고 條件은 東洋紡은 캐리코에게 12,000萬円, 유니티카는 8,000萬円을, 帝人과 東洋에게는 東洋紡이 22,000萬円, 유니티카는 18,000萬円의 損害賠償金을 지불하기로 確定함으로써 8年間의 法廷劇은 매듭을 지었다.